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이종배 · 이현승
김선교 · 김용태 · 안철수
조지연 · 정연욱 · 박정하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·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.

이에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제1호는 203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